

	학점인정심의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38
		제정일자	2019.08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4항, 학칙 제44조에 근거하여 안산대학교 학점인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외어학연수, 국내·외 전공연수, 현장실습, 학교기업현장실습, 글로벌현장실습, 사회봉사 수행결과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전문대졸이상 정원외대학입학자 교양과목 학점인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전적대학 졸업(수료)학점 인정, 편입생 학점인정, 재입학생 학점인정, 전과생 학점인정, 조기(미출석)취업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3. K-MOOC 교과 이수, 군복무 중 학점취득, 본교 예비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학점인정
4. 기타 학점인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5. 위원회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
② 학점인정에 있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필요한 경우 기타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1. 임시위원: 비정규 학점인정 과정 수행 주관부서 처장
2. 외부위원: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학점인정 사안이 있을 때
4.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④ 심의결과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여 의결을 받으며, 부결시에는 재심의를 한다.

제7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회, 업무관련부서와 연구소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용하고, 그 외의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